

제403회 정례회

'22. 9. 16.(금)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사유

- 2022. 3. 25.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안 제2조)
-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의 원장 사이의 성과계약(경영목표, 권한과 책임, 보수 등) 체결 및 평가 등 (안 제3조, 제4조)
-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 및 수당 지급 등 (안 제5조~제11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위탁계약의 연속성 담보의 어려움에 의한 고용관계의 불안, 개개 시설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체계적·균질적 서비스 제공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 구성 및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제정을 추진함.
-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과의 성과계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조제4항에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 및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4조에서는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 책정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 제21조제3항<sup>1)</sup>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성과계약)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항과 제4항<sup>2)</sup>에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 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 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참 고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황

### □ 관련규정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21.09.24. 제정, 2022.03.25.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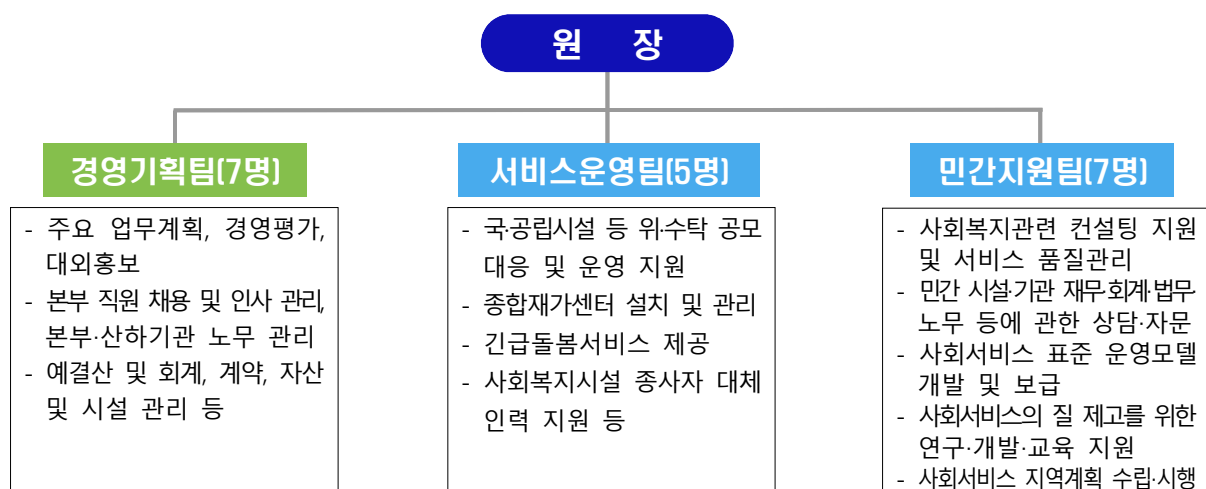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 : 시도지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국공립 복지시설·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 □ 필 요 성

-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 □ 사업개요

- 설립형태 :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특수법인
- 주사무소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내)
- 기본재산 : 도비 1억원 출연 ※ 충북여성재단 규모로 출연 예정
- 예산규모 : 운영비 年 19억원(국비 50%, 도비 50%), 설치비 5억원(1회, 국비 100%)
- 조 직 : 3개팀 20명(원장, 경영기획팀 7, 서비스운영팀 5, 민간지원팀 7)



## □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사업 수탁 운영
  - 법인 부족, 민간수탁 기피 등으로 위탁추진에 난항을 겪는 시군 지원
  - 취약계층 학대피해보호기관 등 공적책임이 높은 위탁기관 수탁 운영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차별화된 긴급돌봄(코로나19, 갑작스런 질병·사고, 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 등)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운영 등을 통한 인프라 취약 시군 지원
  - 유사서비스(맞춤형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
-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 (교 육) 채용·근로계약·근로환경 등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직무교육
  - (컨 설 텅)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지원
  - (안전관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수선 등
-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 사회서비스별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방안 연구 등

##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타시도 벤치마킹(대구, 경남) : '20.08.
- 사회서비스원 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및 도의회 간담회 : '20.09.
-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계획 수립 : '20.12.
-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실무협의 : '20.12.
-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용역 추진(충북연구원) : '21.03.~07.

- ▶ 용역명 : 가칭)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
- ▶ 용역기간 : '21. 3. 4. ~ '21. 7. 31.(5개월)
  - \* 착수(3.4.), 착수보고회(3.9.), 중간보고회(5.27.), 공청회·최종보고회(7.19, 7.29.)
- ▶ 지원예산 : 30,000천원 ※ 정책기획관실POOL예산 활용
- ▶ 수행기관 : 충북연구원
- ▶ 주요내용 : 중복형 사회서비스원 모형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출자출연기관 설립 행안부 1차 협의(설립위원회 심의) : '21.04.

\* 타당성연구 전문기관 지정(지방공기업평가원), 간소화 절차 적용(검토기간 4개월)

- 정책연구용역 심의(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 '21.07.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협의 및 계약 추진 : '21.07.~08.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지방공기업평가원) : '21.08.~12.

▶ 용역명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21. 8. 27. ~ '21. 12. 26.(4개월)

\* 계약 체결(8.27.), 현장조사(10.13.), 전문기관 자체심의(12.22.), 연구용역 완료(12.24.)

▶ 지원예산 : 55,000천원 ※ 정책기획관실POOL예산 활용

▶ 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행정안전부 지정

▶ 주요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공공수행 여부, 경제성분석, 사업주체 적정성 등)
- 설립계획의 적정성(조직과 인력, 자원조달방법, 공무원 감축 등)
- 주민복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효과 등 기대효과 분석

-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시·도 간담회(보건복지부) : '22.01.
- 사회서비스원 타시도 벤치마킹(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 '22.02.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실무 협의(보건복지부) : '22.03.
- 2022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의회 출연동의 : '22.03.
-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상지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22.03.~0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사전 협의(보건복지부) : '22.05.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방침결정 : '22.07.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2.08.
- 설립 타당성 심의(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 '22.08.
- 설립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 '22.9.2.~9.17.

##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22.09.
- 임원 공모 및 임명 절차 추진 : '22.09.~
- 사회서비스원 정관 허가 및 법인 설립 등기, 개원 : '22.09.~10.